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377]

의견서

2021. 6.

[사] 오픈넷



대표자: 황성기

주소: [우]066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62-9, 402 [서초동, 한림빌딩]
전화번호: 02-581-1643 팩스: 02-581-1642

I. 전자상거래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2조)

1. 주요내용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이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2. 검토의견: 수정

- 본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이하 “플랫폼사업자”)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그런데 제2조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¹⁾ 경우 해당 서비스”는 ‘연결수단 제공’이나 ‘거래중개’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2조 제5호 가목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재화등에 관한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라고 하여 “정보매개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고 SNS와 C2C 중고마켓을 대표유형으로 들고 있음. 본 개정안의 체계, 조문, 자구 등이 공정위안과 대동소이하다는 점과 본 개정안 제29조 제2항이 정보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1) 의안원문의 “이루어지 경우”는 “이루어질” 또는 “이루어지는”의 명백한 오타자로 보이나 이하 그대로 인용함.

플랫폼사업자의 분쟁해결의무를 규정한 공정위안 제28조 제2항과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개정안 제2조 제5호 가목의 서비스 또한 정보매개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정보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는 강학상 정보매개자(intermediary)라고 함. 현행법상 ‘정보매개자’라는 개념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참조)가 정보매개자에 해당함. 정리하자면 정보매개자란 “매개되는 정보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직접 정보를 생성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음. 물론 광의의 정보매개자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도 포함되나, 현행법에서는 이들을 기간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있음. 현재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네이버, 다음 등), 검색엔진(구글 등), 대화방서비스(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서비스(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개인방송(아프리카TV 등) 모두 정보매개자라고 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은 정보매개자에 해당함. 따라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 적용될 여지가 있음. 비록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 경우”라고 하여 플랫폼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처럼 보이나 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자들이 비대면 전자상거래를

할 목적으로 게시판을 이용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함

- 개정안과 같이 모든 정보매개 플랫폼을 전자상거래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보고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 목적, 타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으므로, 정보매개 서비스를 적용대상에서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플랫폼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II. 정보의 투명성 확보조치 신설(안 제16조)

1. 주요내용

-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사업자가 이용후기 게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2. 검토의견: 찬성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찬성함

III. 맞춤형 광고 등 정보이용 시 고지의무 강화(안 제18조)

1. 주요내용

- 타겟형 광고 등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할 수 없어 합리적 선택을 제약받게 되므로, 맞춤형 광고 제공시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경우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검토의견: 찬성

-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찬성함

VI.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분쟁해결의무 등(안 제29조)

1. 주요내용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권고 의무, 피해구제신청대행장치 마련 의무 등을 부과함

2. 검토의견: 반대

- 제29조 제2항은 제2조 제5호 가목의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지우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4조 제4항 제1호)
-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는 정보매개자로서 검색엔진부터 SNS, 메신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정보매개 플랫폼의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공유함. 그런데 이용자들이 비대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부과한다면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는 사적검열로 이어지게 될 것임. 결과적으로 사적검열 강제로 인해 플랫폼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함

VII.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안 제30조)

1. 주요내용

-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거래 당사자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원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바 개인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분쟁 발생시 연락처 및 거래내역을 공적 분쟁조정기구에 제공하여 분쟁 조정에 협조하도록 함

2. 검토의견: 반대

- 동 조항은 플랫폼사업자에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강제하고, 분쟁 발생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개인판매자의 연락처와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음. 따라서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개인판매자의 연락처와 거래정보를 확인한 뒤 수집·보관하게 될 것임. 그런데 정보매개자를 포함하는 플랫폼사업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지운다면 사실상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함

-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로써 헌법재판소는 2012년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헌재 2012. 8. 23. 2010헌마24·252(병합)), 2021년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헌재 2021. 1. 28. 2020헌마406)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VIII.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안 제48조)

1. 주요내용

- 사기사이트 폐쇄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수단인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임.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명백한 범위반이 의심될 경우로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행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의 중지·삭제, 청약철회 방해 문구의 삭제, 사이트 내 경고 문구의 게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검토의견: 수정

- 개정안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정안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정위는 임시중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역무 제공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음. 플랫폼사업자가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제64조 제4항 제9호)
- 플랫폼사업자에는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 즉 정보매개자가 포함되므로, 동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와 유사한 제도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합법정보도 포함될 수 있음. 게다가 플랫폼사업자가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플랫폼사업자는 공정위의 요청만 있으면 합법정보도 무조건 차단하게 될 것이어서 과검열로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2조 제5호 가목의 정보매개 플랫폼사업자를 제외하는 수정이 필요함